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. 6. 18 선고 2018가단6558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고1. A

2. B

피고C

변론 종결2019. 5. 21.

판결 선고2019. 6. 1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
가. 여주시 D 대 2,389㎡를 인도하고,

나. 여주시 D 대 2,389㎡ 중 별지1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가' 부분 지상 목조스레이트 지붕주택 120.83㎡, 같은 도면 표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, 13, 1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나' 부분 지상 목조스레이트 지붕주택 210.4㎡, 같은 도면 표시 1, 2, 3, 4,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'다' 부분 지상 건물 2.32㎡를 각 철거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

판사박하영

별지